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190
----------	------------

제안년월일 : 2025년 12월 22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고 예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설치 주체와 위원·간사 구성을 명확히 하고, 승인 취소 시 소명기회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며 사용승인 현황공개의 유연성을 확보함.

2. 주요내용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고, 예외 규정을 추가함(안 제4조).
- 심사위원회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 및 간사를 직위 기준으로 정비함(안 제6조).
- 사용승인 취소 시 부여되는 소명기회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 의무인 사용승인 현황공개를 임의규정으로 정비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원명칭 사용예정일”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후원명칭”을 “의장은 후원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명으로”를 “5명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4인의 부서장으로”를 “부서장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사용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단체” 라 한다)는 <u>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u>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p> <p>① <u>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u>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5명</u>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의 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u>4인의 부서장으로</u> 한다.</p> <p>⑤·⑥ (생략)</p> <p>⑦ 위원회의 간사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업무 담당 <u>사무관</u>으로 하며, 위</p>	<p>제4조(사용신청) ① ----- ----- ----- <u>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u> ----- ----- -----.</p> <p>1. ~ 6.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p> <p>① <u>의장은 후원명칭</u> ----- -----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 <u>5명 이내</u>로 -----.</p> <p>④ ----- ----- ----- <u>부서장으로</u> -----.</p> <p>⑤·⑥ (제정안과 같음)</p> <p>⑦ ----- ----- <u>팀장</u>-----</p>

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단체에게 위원회의 승인취소 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10조(승인관리 등)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③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승인관리 등) ① -----

공개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칭, 휘장 등 의회 상징물 전체를 말한다.

제3조(승인 대상)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 관련 업무 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성 행사
3.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성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2. 단순한 공연성 행사

3.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4. 안전관리·예산지원 등 행정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사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단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다)
3. 신청단체의 현황
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의장 명의의 상장수여(이하 “상장수여”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수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단체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목적, 내용 및 규모
 3. 신청단체의 설립목적, 운영현황, 행사개최의 역량
 4. 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대한 후원요청 여부와 결과
 5. 상장수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 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후원명칭 사용신청 및 상장수여 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의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의 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의장은 신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단체에게 위원회의 승인취소 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신청단체에 대하여는 취소 의결일 기준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기간 동안 승인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고, 신청단체가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단체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청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승인관리 등)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의장은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안전관리예산지원 등 행정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후원기관 명칭 사용신청은 승인 불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 기관·단체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담당자 연락처	전화				
		팩 스				
		E - m a i l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행 사 주 최						
행 사 주 관						
요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후원명칭 승인 <input type="checkbox"/> 상장				
요 청 사 유						
후 원 예 정 기 관 · 단 체 명						
행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 사 장 소						
참 석 대 상				참 석 인 원 (추 정)	명	
위 행사에 대한 귀 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제출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1부. 2.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조직, 연혁, 인력현황, 사업 등) 1부. 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상장 요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별지 제2호서식) 1부.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상장수여 신청서

신청내용

상 장 매 수	<input type="radio"/> 매
발 급 방 법	<input type="checkbox"/> 수상자 성명 기재 <input type="checkbox"/> 수상자 성명 미기재(성명란 공란)

심사계획

심 사 방 법	(예시)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내부, 외부인사 구분) - 심사절차(예선, 본선) - 심사기준(예선, 본선) - 수상자결정방법(순위 및 점수)
시 상 계 획	(예시) - 대통령 표창 - ○명 - 서울시의장상 - ○명 - 서울시장상 - ○명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제출

※ 상장에 수상자 성명 기재 희망 시, 수상자 결정 후 다음 양식에 따라 수상자 인적사항 제출

연번	이름	소속	직위(직업)	생년월일	비고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행사결과보고서

행사 개요

행사명	※ 행사결과보고서는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주최	
주관	
일시	
장소	
참여인원	
후원받은 내용 (타기관 후원명칭 사용 포함)	

상장수여 내역

연번	이름	소속	직위(직업)	생년월일	비고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우수상

행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홍보 또는 안내방법(사본첨부)- 행사진행 경과, 참석자 내역 등- 시상내역(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시장상 등)-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행사사진

--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연번	주최/주관 기관 또는 단체	행사명	일시	장소	승인사유	비고
1						
2						
3						

후원명칭 사용 불승인 관리대장

연번	주최/주관 기관 또는 단체	행사명	일시	장소	불승인사유	비고
1						
2						
3						